2022년 목포시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공개

Ⅰ 감사개요

O 감사기간 : 2022년 상반기

■ 감사기관별 2 ~ 4일간

O 감사기관(7)

■ 보조금시설(7) :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, 상리사회복지관, 하당노인복지관, 목포장애인요양원, 소망장애인복지관, 목포시노인복지관, 공생재활원

O 감 사 반 : 감사팀장 외 4명

O 감사분야 : 세입·세출 등 기관운영 전반

O 감사결과

구 분	행정상 조치(건)				재정상조치 (건/천원)			
	계	시정	주의	권고	계	추징	회수	추급
Л	56	7	29	20	100	0	100	0
목포시종합 사회복지관	9	_	6	3	_	_	_	_
상리사회 복지관	8	2	3	3	_	_	_	_
하당노인 복지관	6	_	2	4	_	_	_	_
목포장애인 요양원	9	2	4	3	_	_	_	_
소망장애인 복지관	11	_	8	3	_	_	_	_
목포시노인 복지관	6	2	3	1	_	_	_	_
공생재활원	7	1	3	3	100	_	100	-

Ⅱ 감사결과 지적사항

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

- 1 |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호봉 획정 소홀
- O 000을 채용하면서 지침서상 사회복지시설경력이나 유사경력에 해당 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을 100% 인정하여 호봉을 획정
- ▶ 「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」에 따라 호봉을 획정하기 바람.(주의)
- 2 프로그램강사 채용시 범죄경력 조회 소홀
- 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하면서,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받아 채용 전에 경찰서 등에 조회 해야 했으나 조회하지 않았고, 채용 후 시에서 일괄조회 하였음.
- ▶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전에 범죄전력을 조회하시기 바라며,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(주의)
- 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강사수당 지급 미흡
- 축의 및 조의금을 집행하면서 5만원을 초과해 집행하였으며 조의금과 화환을 동시에 집행
-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강사수당과 자문료 등을 일괄로 처리함.
 - ▶ 축·조의금 집행시 현금은 5만원, 화환은 10만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현금과 화환을 동시에 집행할 수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라며, 강사수당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지급할 것.(주의)
- 4 「복지관 운영 및 직원복무규정」 개정 권고
- 복지관 운영 및 직원복무규정에 채용 등 인사분야 규정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음주운전, 채용비리 등에 관한 징계양정 세부규정이 미흡하며 블라인드 채용 지원서 등 서식이 부족함.
- ▶ 관계법령을 참고해 개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(권고)

5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수당규정 개정 권고

- 규정이 없이 공간복지팀장 직위에 자격수당, 조리사에게 기술수당을 지급
- ▶ 관련부서와 협의 후 「복지관 운영 및 직원복무규정」을 개정하여 위 수당을 지급(권고)

6 시설운영위원회 회의 공개 및 규정개선 권고

- 시설운영회의를 개최하고서도 그 내용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시설생활자, 시설종사자 등에게 미공개
- 「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규정」이 2008. 9. 25. 개정된 이후 변경사항에 대한 개정이 없음
- ▶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후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개 및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권고)

7 방제(소독) 업무 소홀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 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간을 초과 (3~20일)하여 소독을 실시
- ▶ 법정 소독주기에 맞춰 소독할 것(주의)

8 소방훈련 등 실시 미흡

-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면 14일 이내 소방서장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일부 선임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으며, 2021년에는 훈련 및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나 소방서와 합동훈련 미실시
- ►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시고, 년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할 것(주의)

기능보강 사업 업무추진 부적정

- 청렴서약서, 계약보증금 지급각서, 하자보증금 지급각서 미 징구
- 착공계, 준공계, 설계내역서 등 공사 감독관 확인누락
-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
- ▶ 시설공사 시 관련서류 징구 및 정기하자검사 실시 철저(주의)

상리사회복지관

- 1 「복지관 운영 및 직원복무규정」 개정 권고
- 「복지관 운영 및 직원복무규정」에 채용 등 인사분야 규정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음주운전, 채용비리 등에 관한 징계양정 세부규정이 미흡하며 블라인드 채용 지원서 등 서식이 부족함.
- ▶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개정해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람.(권고)
- 2 직원 채용절차 미흡
- 공개채용 시 자격조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음에도, 사회복지학과 졸업 예정자인 ○○○을 채용하여 채용 당시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를 채용함
- ▶ 추후 직원채용 시 「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」지침 등에 따라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축할 것(주의)
- 3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적정 작성 권고
- 2019년부터 2022년 3월 현재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을 작성하면서 후원금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아 지정후원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음.
- ▶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·비치해 후원금의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(권고)
- 4 기능보강사업 업무추진 부적정
- 청렴서약서, 계약보증금 지급각서, 하자보증금 지급각서 미 징구
- O 착공계, 준공계, 설계내역서 등 공사 감독관 확인누락
-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
- ▶ 시설공사 시 관련서류 징구 및 정기하자검사 실시 철저(주의)

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이수

- 상리사회복지관에서는 법정 의무교육 이행을 적절히 추진하고 있으나, 교육시기가 적절히 분배되지 않음.
- ▶ 연간 교육계획을 세워 시설 직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빠짐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(권고)

6 ┃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및 이행보증보험 관리 소홀

- ②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, 퇴사자 및 휴직복귀자에 대한 재정 보증보험이 감사일 현재까지 변경 처리되어 있지 않음
- ► 퇴사자 및 휴직복귀자에 대해 재정보증보험을 변경처리 하시고, 이행보증보험 계약자를 현 관장으로 변경하시기 바람(시정)

7 복지관 차량(폐차) 관리 미흡

- O 차량 폐차 후 감사일 현재까지 자동차세 미환급. 자동차보험료 미정산
- 주정차위반과태료 2건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
- ▶ 환급받은 자동차세를 세입처리, 자동차보험료를 정산, 시설 소유 차량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할 것(시정)

프로그램 강사 재채용 및 범죄경력 조회 소홀

-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한 이00 외 4명을 공개채용 하였으나, 계약종료 후 재채용 과정을 생략하여 운영하였으며, 또한 강사 채용시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받아 채용전 경찰서 등에 조회 요청하여 회신을 받아야 하나 조회하지 않고 채용 후 시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조회 함.
- ▶ 프로그램 강사 채용이나 재채용시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하시기 바람(주의)

하당노인복지관

- 1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신고필증 기재사항 변경 누락
- 영양사 김00의 출산휴가 기간[2019. 8. 26. ~ 2020. 9. 24.(1년 1개월)] 에 영양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음.
- ► 대체인력 채용시에도 영양사 변경사항을 신고하시고, 업무연찬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.(권고)
- 2 인사관리 규정 개선 권고
- 하당노인복지관 「인사관리규정」에「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」의 내용과는 다르게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이 있음.
- 음주운전, 채용비리 등에 관한 징계양정 세부규정이 미흡하며 블라인드 채용 지원서 등 서식이 부족
- ► 「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」지침을 참고하여 특별채용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선하고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징계양정 세부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.(권고)
- 3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적정 작성 권고
- O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을 작성하면서 후원금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아, 지정후원금의 용도(지정, 비지정)를 확인할 수 없음.
- ▶ 관련 법령을 참고해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·비치해 후원금의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(권고)

4 기능보강 사업 업무추진 부적정

- 청렴서약서, 계약보증금 지급각서, 하자보증금 지급각서 미 징구
- O 착공계, 준공계, 설계내역서 등 공사 감독관 확인누락
- O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
- ▶ 시설공사 시 관련서류 징구 및 정기하자검사 실시 철저(주의)

5 프로그램 강사 채용 및 범죄경력 조회 소홀

- 2021년 상반기 프로그램 강사로 강00 등 29명을 공개채용 하는 과정에서 채용 전에 범죄전력조회 미실시
- ► 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채용 전에 범죄전력을 조회하시고,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을 실시할 것(주의)

6 하당노인복지관 위·수탁협약서 상 보험관련 사항

- O 이행보증보험은 목포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있으며, 건물 및 공작물 등에 대한 보험은 이랜드하당노인복지관을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있음.
- ► 사후 문제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목포시 노인장애인과와 「하당노인복지관 위·수탁 협약서」제13조의 보험에 관한 부분에 대해 협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조정할 것을 권고함(권고)

목포장애인요양원

1 인권지킴이단 위촉위원 범죄경력 조회 미흡

- ②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► 인권지킴이단 위촉자는 범죄 경력 등 조회 법적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인권지킴이단 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거주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할 것(권고)

2 목포장애인요양원 차량 관리 미흡

3

- 시설 차량 매각시 실거래가격이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매각하여야 함에도 불용 결정과 매각 예정가격 산정 없이 매각 처리하였음.
- O 차량을 폐차하고 현재까지 자동차세 미납 및 보험료 미정산
- ► 불용품의 처리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고, 폐차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 및 자동차 보험료 정산(시정)

병원진료 및 장례식장 목포시 관내 시설 이용

- 무연고자 사망시 사망자별 장례식장 이용료 등이 상이하고 사망자 주민등록증 및 체크 카드 등이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
- 목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운영되는 시설이나 무안군에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무안병원 등을 이용
- ►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처리 적용 지침에 따라 장례비용을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 및 시설 이용인이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 목포에 소재한 시의료원 등과 협의하여 이용할 것(권고)

4 물리치료실 운영 관련법규 미준수

-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서 촉탁의사 등의 처방 및 지도 없이 물리치료를 하는 등 지속적 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
- ▶ 촉탁의사 등의 처방 및 지도에 따라 물리치료를 실시(주의)

5 실비입소자 주민등록 관리 소홀

- ② 입소 장애인의 주소지를 시설 주소지로 이전해야 했으나, 실비입소자 서00 외 2명의 주소지를 감사일 현재까지 거주시설로 이전하지 않았음.
- ▶ 서00 외 2명의 주소지를 거주시설로 이전할 것(시정)

6 목포장애인요양원 집단급식소 운영 소홀

-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세부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종사자 등에게 매월 4~5만원씩 일괄 중식비를 납부
- O 영양사 1명과 조리사 3명을 채용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영양사 1인만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교육을 이수
- ► 종사자 급식비 등 급식관련 세부규정을 정비하여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조리사에 대해서도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이수(주의)

기능보강 사업 업무추진 부적정

- 청렴서약서, 계약보증금 지급각서, 하자보증금 지급각서 미 징구
- O 착공계, 준공계, 설계내역서 등 공사 감독관 확인누락
- O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
- ▶ 시설공사 시 관련서류 징구 및 정기하자검사 실시 철저(주의)

8 운영규정 개선 권고

- 「목포장애인요양원 운영규정」에 음주운전 등에 관한 징계양정 세부규정이 미흡
- ▶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개정해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(권고)

9 시설운영위원회 회의 미공개

- 시설운영회의를 개최하면서도 그 내용을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시설생활자,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음
- ▶ 시설운영회의 개최 후 홈페이지, 게시판 등을 이용해 공개(주의)

소망장애인복지원

- 1 소망장애인복지원 이용인 퇴소 관리 소홀
- O 장애인 오00에 대해 퇴소전후 관련 서류를 시에 공문으로 제출하지 않음
- 「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」와 다른 서식 사용
- ▶ 장애인의 입·퇴소시 관련 서류 제출 및 통보를 철저(주의)
- 2 소망장애인복지원 이용인 주민등록 관리 소홀
- O 이용 장애인 입소시 주소지를 시설 주소지로 개별 세대로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음.
- ▶ 미성년자 등을 개별 세대로 등록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시설장을 세대주로 지정하여 이용인들을 세대원으로 구성(권고)
- 3 인권지킴이단 위촉위원 범죄조회 통보
- ②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▶ 인권지킴이단 위촉자는 범죄 경력 등 조회 법적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인권지킴이단 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거주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예방(권고)
- 4 직원채용 절차 미흡
- 직원 채용 공고시 워크넷(work.go.kr) 필수 사이트 미공고
- 응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없이 면접대상자를 선정
- ▶ 직원 채용 공고시 필수 사이트에 공고해 주시고, 서류심사 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면접 대상자 선정할 것.(주의)

5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미흡

-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직전년도 납품업체와 공고 없이 수의계약
- 2022년에는 해당시설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 실시 등 납품업체 선정 부실
- ►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시 입찰공고를 철저히 시행하시고 업체평가 시 현장실사, 심사 위원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을 내실있게 진행(주의)

6 소망장애인복지원 「취업규정」 개정 권고

- 채용 등 인사분야 규정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음주운전, 채용비리 등에 관한 징계양정 세부 규정이 미흡하며 블라인드 채용 지원서 등 서식이 부족
- ▶ 관련법령을 참고해 개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(권고)

7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

- 보조금 사용 관련 체크카드 3개를 보조금 전용카드가 아닌 일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
- ▶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(주의)

8 시설운영위원회 회의 미공개

- 시설운영회의를 개최하고서도 그 내용을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시설생활자, 시설 종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음
- ▶ 시설운영회의 개최 후 홈페이지, 게시판 등을 이용해 공개(주의)
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이수

- ② 2019년도 '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'을 실시하지 않았으며, 2020년 2월 21일에는 2시간 동안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3개의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여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짐.
- ▶ 연간 교육계획을 세워 시설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(주의)

10 기능보강사업 업무추진 부적정

- O 계약보증금 지급각서, 하자보증금 지급각서 미 징구
- O 착공계, 준공계, 설계내역서 등 공사 감독관 확인누락
-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
- ▶ 시설공사 시 관련서류 징구 및 정기하자검사 실시 철저(주의)

11 소방 합동훈련 미실시

- 2019년~2021년까지 매년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소방서와 합동훈련 미실시
- ▶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실시(주의)

목포시노인복지관

1 직원채용 절차 미흡

- 2022년 신규직원 채용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(w4c.go.kr)에 직원채용 공고를 미실시
- ▶ 직원채용 시 관련지침에 따른 필수 사이트에 반드시 공고하고, 공고기간 등 공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고(주의)

2 장애인 의무고용 미흡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

- ② 2021년 1, 7, 10, 11, 12월에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고용률로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전남지사로부터 부담금 5.305.900원을 납부토록 통보받아 납부
- ► 직원채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충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(주의)

3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신고증 기재사항 변경 누락

- 조리사 조△△의 퇴직으로 2019. 3월에 김00를 신규채용했으나 2020. 2월 퇴직할 때까지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음
- ▶ 집단급식소 영양사 뿐만 아니라 조리사 변경 시에도 변경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(시정)

4 복지관 운영차량 자동차등록증 소재지 변경

- 목포시노인복지관 소유 차량의 주소가 복지관의 주소가 아닌 복지관 관장의 자택 주소로 자동차등록증에 기입
- ▶ 복지관 운영차량 등록 시 차량의 주소를 복지관의 주소로 등록(주의)

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이수

- O 2020, 2021년 「직장 내 장애인 인식교육」을 미실시
- ▶ 직원들이 빠짐없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(주의)

6 목포시노인복지관 인사 및 징계규정 개정 권고

- 채용 등 인사분야 규정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음주운전, 채용비리 등에 관한 징계양정 세부 규정이 미흡하며 블라인드 채용 지원서 등 서식이 부족함
- ▶ 관련법령을 참고해 개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(권고)

공생재활원

1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

- 직원 박00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자녀 박△△(생년월일 2002. 08. 08.)이2021. 8월에 19세가 됐음에도 2022. 1월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였음.
- ▶ 부적절하게 지급한 가족수당 100,000원을 회수(시정)

2 식자재 (주·부식류 등) 입찰 및 계약관리 절차 개선

- ② 2021년 집단급식소 납품업체 입찰 공고 시 시설 홈페이지에만 공고했고, 업체 평가 시 현장실사 과정을 생략했으며, 평가위원도 2~3명 밖에 되지 않고, 2021년 선정된 업체 와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였음
- ► 집단급식소 납품업체 입찰공고 시 시설 홈페이지 외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등 납품업체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.(주의)

3 공생재활원 시설 규정 일제정비 권고

- 「시설 제 규정집」이 2015년 개정 이후 개정한 사항이 없어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변경사항이 규정집에 미반영
- ▶ 관련법령을 참고해 전반적인 규정 개정을 통해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(권고)

기능보강 사업 업무추진 부 적정

- 청렴서약서, 계약보증금 지급각서, 하자보증금 지급각서 미 징구
- O 착공계, 준공계, 설계내역서 등 공사 감독관 확인누락
- O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
- ▶ 시설공사 시 관련서류 징구 및 정기하자검사 실시 철저(주의)

5 디딤씨앗통장(CDA) 운영 소홀

- 강00 등 3명의 아동은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을 정부매칭(1:2) 5만원 적립시 최대 10만원 까지 매칭이 가능하나 1~3만원만 적립
- ▶ 후원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내를 실시하는 등 정부매칭 금액 전액이 적립될 수 있도록 추진(권고)

6 문화누리카드 사용 소홀

- 문화누리카드를 대부분 도서구입 등에만 사용
- ▶ 공연, 영화관람, 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것(권고)

7 물품구입 비품 등록관리 소홀

- 2019년도에 취득한 물품 중 비품으로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할 3건의 품목에 대하여 비품관리대장 등록을 누락
- ▶ 물품 취득 시 관련법령에 따라 비품관리대장에 등록(주의)